

## < 별첨 >

[기능] 경영기본  
[규정] 이사회규정  
[규칙]

이사회규정  
( AB0-06 )

### 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 목적 )
- 제 2 조 ( 적용범위 )
- 제 3 조 ( 권한 )
- 제 4 조 ( 구성 )
- 제 5 조 ( 의장 )
- 제 6 조 ( 회의의 종류와 소집 )
- 제 7 조 ( 성립 및 결의 )
- 제 8 조 ( 부의 )
- 제 9 조 ( 이사의 의무 )
- 제 10 조 ( 위임 )
- 제 11 조 ( 의사록 )
- 제 12 조 ( 간사 )

### 부 칙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 목적 )

이 규정은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한라홀딩스 이사회 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 적용범위 )

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 3 조 ( 권한 )

1.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2.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3. 이사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# 제 4 조 ( 구성 )

1.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2. 이사회는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부서를 두며 간사부서는 경영기획팀 된다.

### 제 5 조 ( 의장 )

이사회는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### 제 6 조 ( 회의의 종류와 소집 )

1.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2.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실시하며, 임시 이사회는 어느 이사의 요청시 소집한다.
3.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[5]영업일 이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단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 제 7 조 ( 성립 및 결의 )

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2. 이사회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다만 상법상 결의요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따라야 한다.
3.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### 가. 상법상의 이사회 의결 사항

- 1) 주주총회의 소집
- 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3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승인
- 4) 사채의 발행
- 5) 신주/전환사채/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
- 6) 주식의 양도 승인
- 7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취소
- 8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9)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, 대규모 재산의 차입, 지배인의 선임 또는 지점의 설치/이전 또는 폐지 등의 업무집행
- 10)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 전입의 승인
- 11) 중간배당의 승인
- 12)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
- 13) 기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

### 나.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

- 1) 연간사업계획의 승인
- 2) 최초사업계획의 중대한 수정 또는 변경
- 3) 회사자산에 대한 담보설정
- 4) 자회사 자본불입 및 차입을 위한 보증 승인
- 5) 중요한 기술, 특허 기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
- 6) 자본(금) 증가에 관한 사항
- 7)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다. 기타 법령 또는 정관,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라. (2)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1) 상법 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
  - 정관의 변경
  -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,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일부의 양수
  - 사후설립
  - 이사 해임
  - 자본의 감소
  -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
- 주식의 분할
  -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
  - 회사의 해산
  - 회사의 계속
  -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
  -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
  - 회사의 분할, 분할합병, 물적분할
  -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
  -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
  -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2)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
- 3)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자사주식에 대한 교환사채의 발행
- 4) 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5)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의 5%를 초과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 이외의 신규 사업에의 진출  
(타회사 또는 사업부문의 인수, 자회사의 설립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)
- 6)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
4. 이사회에 다음의 사항을 보고한다.
- 1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 - 2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- 3)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

## 제 8 조 ( 부 의 )

1. 이사회 의의안은 각 이사가 발의 한다.
2.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각 이사는 상정 의안의 개요를 회의일 [5]영업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 제 9 조 ( 이 사 의 의 무 )

1. 이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2.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 본인에게 있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한다.
4. 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,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, 경직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.

## 제 10 조 ( 위임 )

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소관 업무 해당 임직원 그리고 이사회내 위원회에게 그 결정과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.

## 제 11 조 ( 의사록 )

1. 이사회 간사는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3.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간사부서에서 보관한다.

## 제 12 조 ( 간사 )

1.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2. 이사회 간사는 경영기획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이 되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 ( 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8일부로 제정 시행한다.

제 2 조 ( 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제 3 조 ( 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제 4 조 ( 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제 5 조 ( 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제 6 조 ( 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제 7 조 ( 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제 8 조 ( 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2014년 9월 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제 9 조 ( 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을 승인한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0 조 ( 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
제 11 조 ( 개정시행일 ) 이 규정은 2022년 3월 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